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1.

발 의 자 : 황명선 · 박 정 · 서영석
박정현 · 김동아 · 신영대
신정훈 · 김남희 · 박홍배
민병덕 · 염태영 · 송옥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, 재판서,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「법원조직법」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.

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, 그렇기에 현행 「형사소송법」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‘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, 체격,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, 성

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.

이에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,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,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16조).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신입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, 체격, 기타 신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입자를 수용한 소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을 행정안전부·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조조회 요청하는 등 수용된 신입자의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